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377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2년 월 일 (제314회) |

**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
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12년 8월 31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77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2년 8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아동·여성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아동·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기반마련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설치·운영

2. 주요내용

-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설치(안 제4조)
- 협의회의 구성(안 제5조)
 - 위원장(당연직 : 행정부지사) 포함 20명 이내
- 협의회의 기능(안 제7조)
-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등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아동·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피해 예방·보호·치료를(이하 "예방·보호·치료"라 한다) 위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2. 예방·보호·치료를 위한 관련시설, 의료·교육·법률·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예방·보호·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3.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예방·보호·치료를 위한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로 폭력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·단체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설치) 도지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추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

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 다만, 효율적인 협의회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아동·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(이하 "추천인"이라 한다)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원
2.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피해자 등 여성권의 관련시설·단체에서의 추천인
3. 아동보호관련 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
4. 청소년상담지원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
5. 긴급 또는 응급구조 등 의료기관에서의 추천인
6. 아동·여성·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 교수
7.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청에서의 추천인
8. 경찰, 검찰, 법원 등 사법 관련기관에서의 추천인
9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공동위원장은 민간단체 추천인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⑥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아동·여성 보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궐위사유로 재위촉한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·조정하여 운영한다.

1. 아동·여성 보호·치료 등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책마련
2. 아동·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
3. 아동·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전개
4.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·단체에서 제시한 아동·여성안전 관련 지역현안 해결 사업
5. 그 밖에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협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추천한 해당 기관·단체의 실무전문가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겸임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의 업무)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협의회에서 협의·결정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관리
2. 협의회에서 협의·결정할 사항을 사전검토
3. 위기 아동·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방안 협의
4. 그 밖에 관련사업의 추진사항 협의

제11조(사업비의 지원) 도지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

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실비보상) 도지사는 협의회를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충청북도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 회의록

| | |
|-------|--|
| 개최일시 | |
| 장 소 | |
| 참 석 자 | |
| 회의안건 | |
| 회의내용 | |
| 기 타 | |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 g /㎡(재활용품))

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

1. 사업개요

-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회의비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회의비 및 폭력예방 사업비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난 3년간('09~'11년)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

나. 추계 결과

-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회의비 및 폭력예방 사업 : 연7,2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범죄피해자보호기금(여성가족부) 50%, 도비 5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여성정책관 변혜정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12년) | 2차년도 (2013년) | 3차년도 (2014년) | 4차년도 (2015년) | 5차년도 (2016년) | 계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세 입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18,000 | |
|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운영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18,000 | |
| 세 출 | 7,200 | 7,200 | 7,200 | 7,200 | 7,200 | 36,000 | |
|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운영 | 7,200 | 7,200 | 7,200 | 7,200 | 7,200 | 36,000 | |
| 재원 조달 | 7,200 | 7,200 | 7,200 | 7,200 | 7,200 | 36,000 |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18,000 |
| | 보조금 |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| 범죄피해보 호기금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18,000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18,000 |
| | 지방세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3,600 | 18,000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시·군비 | | | | | | | |
| 기 타 (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) | | | | | | | |

관계법령 발췌

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